

「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(안 제1조, 제2조)
 - 목적조문: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
 - 제102조, 제103조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38조
- 정책지원관의 소속, 직무 범위 조항 등 신설 (안 제5조)
 - 관련근거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38조

3. 자치법규안: 별도 붙임

4. 예고기간: 2021. 12. 22.~12. 27.(5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2. 27.(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 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제102조 및 제103조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8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의장”을 “고흥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(이하 “군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관”이라 한다)을군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로 사무과에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
- 2.군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
3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
4. 그 밖에군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

③군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.

④ 정책지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.

1.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
 2.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
- 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·감독 권한을 가진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제102조 및 제103조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8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조직) ① (생략)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,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제2조(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고흥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.</p>
<p>제3조(사무과장) ① (생략)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	<p>제3조(사무과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총괄----- -----.</p>
<p><신 설></p>	<p>제5조(정책지원관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(이하 “군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관”이라 한다)을군의원 정수의</p>

2분의 1 이내로 사무과에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

2. 군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

3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8 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

4. 그 밖에 군의원의 공적 의정 활동 지원 등

③ 군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 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.

④ 정책지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.

1.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

2.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

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·감독 권한을 가진다.

제5조 · 제6조 (생략)

제6조 · 제7조 (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)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